#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869

발의연월일: 2024. 11. 26.

발 의 자: 송재봉·김동아·민병덕

김남근 · 강준현 · 이광희

김남희 • 이수진 • 장종태

소병훈 · 황명선 · 김우영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제고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대등한 거래 및 협의를 도모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에 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배제를 규정하면서, 공동사업 수행 과정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 이익을 침해한 경우는 제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 "소비자" 등 용어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공동사업 수행 가능 여부를 예측하기 어렵고, 소비자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낮은 영세한 규모의 공동사업도 제한되고 있어 공동 사업 수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동사업을 하는 협동조합이 시장지배적지위를 가지는 경우로 서 부당한 경쟁 제한 행위로 최종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공 동사업 수행을 제한하고, 그 세부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적용 배제 규정의 입 법취지를 명확히 하고 공동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 법률 제 호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 본문 중 "사업을"을 "사업(이하 이 조에서 "공동사업"이라 한다)을"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가격인상"을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사업을하는 조합, 사업조합 및 연합회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인상"으로, "소비자"를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 1호에 따른 소비자(생산활동을 위하여 물품 또는 용역을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소비자"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의 세부유형과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11조의2(다른 법률의 적용 배 제11조의2(다른 법률의 적용 배 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 ① -----요건에 해당하는 조합, 사업조 합 및 연합회가 제35조제1항제 1호, 제82조제1항제1호 및 제93 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을 ----사업(이 수행하는 경우 그 목적 달성을 하 이 조에서 "공동사업"이라 위하여 필요한 행위에 대하여 하다)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 제40조제1항 또는 제51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가격인상, 생산 량 조절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 이익을 침해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공동사업을 하는 다. 조합, 사업조합 및 연합회의 시 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인상---------「소비자기본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 자(생산활동을 위하여 물품 또

항 단서에 따라 소비자 이익을 침해한 경우에 대한 기준을 공 정거래위원장과 협의하여 고시 할 수 있다.

는 용역을 사용하는 자는 제외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소비자" 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부당하 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의 세 부유형과 소비자 이익을 침해 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판 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